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9차 금융위원회('25.11.5.) 조치 의결 -

금융위원회(위원장: 이석원)는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일양약품(주)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,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.

< 일양약품(주)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>

회사명	대상자	최종 과징금 부과액
일양약품(주)	회사	62.3억원
	대표이사 등 3인	12.6억원
(주)에스디엠	회사	3,950만원
	대표이사	390만원
	회계법인 지평	390만원

※ 외감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'25.9.10. 및 '25.10.15.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(붙임 참조)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	담당자	주무관	윤우진 (02-2100-2698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유형주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유홍근 (02-3145-7731)
<공동>	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	책임자	본부장	조점호 (02-3145-0353)
		담당자	팀 장	송하식 (02-3149-0365)

회사명	주요 위반사항	증선위·금융위 조치사항
일양약품(주)	<회사> ① 연결대상 범위 확대 (’14년 63,701백만원, ’15년 57,382백만원, ’16년 86,245백만원, ’17년 94,668백만원, ’18년 119,184백만원, ’19년 131,059백만원, ’20년 139,965백만원, ’21년 153,817백만원, ’22년 169,899백만원, ’23년 131,465백만원) -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② 외부감사 방해 - 회사는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	<회사 및 회사관계자> - 과징금 · 회사 62.3억원 · 공동대표이사 1인 6.2억원 · 공동대표이사 1인 4.3억원 · 담당임원 1인 2.1억원 - 감사인지정 3년 -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(공동대표이사 2인, 담당임원) - 검찰통보 (회사, 공동대표이사 2인, 담당임원)
(주)에스디엠	<회사> ① 공사수익과 공사비용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(’19년 5,835백만원, ’20년 7,273백만원, ’21년 4,981백만원, ’22년 7,206백만원) - 회사는 공사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,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공사수익, 공사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(과소)계상함 <감사인> ① 공사수익과 공사비용 인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9년 5,835백만원, ’20년 7,273백만원, ’21년 4,981백만원, ’22년 7,206백만원) - 감사인은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의 인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 -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함	<회사> - 과징금 3,950만원 - 감사인지정 3년 - 감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-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 (개선권고) <개인> - 대표이사 과징금 390만원 <회계법인 지평> - 과징금 390만원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60% - (주)에스디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<소속 공인회계사 3인> -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